

2. 건축실무의 사회화 과정

예술가로서의 건축가라는 것이 오랜 역사를 지닌 서양의 전통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전문직으로서의 건축가는 문화적인 전통과 무관하게 사회에서 건축의 전문영역에 대한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적 통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건축가가 사회 속에서 전문영역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제도화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연속선 상에서 건축가의 지위를 확보해 온 서양에서는 건축 단체형성과의 관련이 있는 반면,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서양의 건축이 전파된 경우는 제도적인 측면이 전문가로서의 건축가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건축가의 전통이 일관성을 지닌 서양에서는 건축집단 내부에서 전문직으로서의 건축가 단체 형성이 사회화 과정의 핵심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한 일본과 한국에서는 전문직으로의 건축가가 사회화되는 과정은 제도적인 장치수

립이 우선시 된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에서는 건축사법의 제정과정이 전문직으로 건축이 사회화되는 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전문직으로 건축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전문영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전문집단이 부여받는 것이다. 이러한 배타성은 전문집단의 실제적인 이득 뿐 아니라 전문영역에 생소한 일반인들에게 전문영역에 대한 신망있는 중재자로서 특정의 전문

능력과 권한에 부합되는 신망을 받게 되는 것도 포함된다. 전문집단의 전문영역에 대한 배타성이 전문가들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전문영역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무자격건축가들이 난립하게 되고 이는 곧 고객의 손해로 이어진다.

둘째는 전문집단이 사회적인 신망과 권한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끊임없이 전문영역에 대한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무는 다음의 세가지 사항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사회적으로 최선의 건축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실무 조건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들 간의 경쟁이 방종한 관계로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간의 경쟁을 통제하는 것이 배타적이고 나태한 이권을 얻기 위한 평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통제가 철저하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실무여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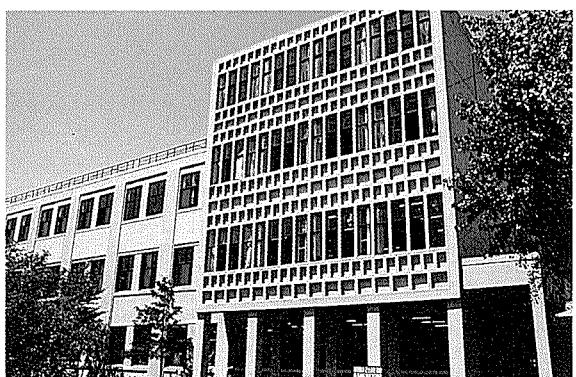
건축실무의 역사(6)

The History of Practical Architecture Business
- 50년대 건축 실무 -

宋 律 /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공학박사
by Song, Yul



덕성여고, 김태식



경기고 과학관, 김태식

마련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지나친 경쟁은 질이 보장되지 않는 싼 값의 서비스를 양산하게되고 이는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둘째의 의무는 전문집단 내부에서 전문영역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발견에 대한 비밀이 없이 회원간에 교류되고 격려되는 전문지식은 전문가의 기술 수준 향상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사회속에서의 건축가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기술적 수준 향상과 아울러 미학적으로 뛰어난 건축물에 대한 시상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의 의무는 새로운 회원의 선발과 관리에 있다. 기존의 회원 간의 이권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회원을 뽑지 않거나 적게 뽑는다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문가들이 모자라게 되고 지망자들로부터 전문집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결국은 전문단체 전체의 위상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는 상기한 전문집단의 권리와 의무가 필요충분조건으로서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건축가가 질 높은 건축에 노력을 경주해야하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강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실제적인 이득과 관련이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나태한 건축가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전문집단의 역할이다. 건축가들 스스로가 전문영역에서의 권한을 독점하여 실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단순한 실리의 추구가 아니라 그러한 독점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도 실제적인 이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직으로서 건축이 부여받는 권한과 의무의 불가분 관계가 강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으로서의 건축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몇 가지 난점에 부딪히게 된다. 이는 전문영역에 대한 권한과 실제적인 이득을 부여받은 건축사협회와

건축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건축가협회와 건축학회 등의 전문단체들이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3단체 문제는 어제 오늘 지적된 것은 아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들 단체들간의 조화는 외형상 사협회가 법적인 건축사들의 단체이고, 가협회는 작가로서의 건축가들의 협회며, 학회는 학문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단체로¹⁷⁾ 인식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으로서의 건축가의 의무와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들 단체들의 성격은 결코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직으로서의 건축가에 대한 의무와 권한의 분리는 전문직으로서의 건축가의 위상이 올바로 정립되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며, 그 역사적 근원은 일제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이해돼야 한다.

* 1938년 신축행위 통제를 위한 건축대서사취체규칙
건축대서사취체규칙은 1938년 8월 26일 부령 178호로 제정된 것으로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건축대서사취체규칙

제1조 건축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대서사(이하 건대라 칭함)에 관한 조선대서사취체규칙(이하 규칙이라 칭함) 제 3조 제 1항 및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본령에 정하는 바이다.

제2조 건축대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위치를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허기를 받아야 한다. 건축대서사사무소를 증설하거나 또는 그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도 전항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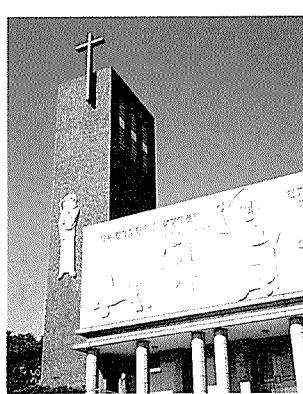
제3조 전조 제 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가해야 한다.

1. 호적초본
2. 이력서

3. 수업연한 6년 이상소학교 졸업정도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수업 연한 6년 이상의 실업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 있어서 건축에 관한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있어서는 졸업증명서의 사본

제4조 허기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행한다. 전조 제 3호 규정하는 자 또는 건축에 관한 지식경험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조선시가지 계획령 및 그 관계법규 아울러 조선대서사취체규칙



혜화동 성당, 이희태



서강대 신부관, 이희태



이대 미대, 김경환

17) 최 창규, “우리나라 입법자들이 작가활동을 통제하므로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나 이미 법이 통과되었고 총회를 하여 건축사협회까지 창립되었으니 잘 키워 나가는게 현명한 일이겠지요.... 법적으로는 건축사협회 회원이고 정신적으로는 건축가협회 회원이 되는 거죠...”, 이승우, “나는 건축사 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처음 제정시의 여러가지 잡음 등으로 보아 건축인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중앙집권적인 기분이 듭니다. (‘한국건축가와 설계사무소의 문제점’, 건축가 1966년 4권에 실린 좌담회)

2. 건축기술

제5조 건축대서사는 규칙 제 4조 또는 제 7조 제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인의 촉탁을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사무에 종사하는 것
2. 타인의 토지가옥의 매매 또는 양도에 관한 것

제6조 규칙 또는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경유해야 한다.

부 칙

본령은 1941년 2월 2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본령을 시행할 때 현재건축에 관한 대서사업무를 행하는 자는 1941년 3월 31일까지 본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대서사취체규칙 2조의 “건축대서사가 되고자하는자는 그 본적, 주소, 씨명, 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위치를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당시 경무국 소속의 上野勲의 해설을 보면 건축대서사취체규칙의 성격을 보다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중략) 전술의 허가신청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 전형시험에 행하여지는 순서가 되나, 신청서만 제출하면 시험을 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규칙발포의 경우에 경무국장으로부터 각도지사원의 예규통첩에 대해서 도지사는 대서사의 정원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축대서사는 인천은 20명, 개성은 10명 등으로 하는 것처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대하여 일정의 정원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신설 또는 증원 또는 결원이 없으면 아무리 신청자가 많아도 건축대서사의 필요가 없어, 따라서 시험도 없다. (중략) 물론 이런 경우는 신청서의 수리도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대서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 전 일단 이런 점을 확인해보는 것이 쓸데없이 노력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건축대서사를 둘 필요가 있으면 신청자에 대해서 전형시험을 행하게 되나. 시험과목은 준칙 제 4조에 의해서 아래와 같다.

- (1) 조선시가지계획령 및 그 관계법규와 조선대서사취체규칙
- (2) 건축기술(이하 생략)¹⁸⁾

해설 내용을 보면 건축대서사 취체규칙은 자질을 갖춘 건축가의 선발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리라 건축대서사

의 숫자 통제로 인한 전반적인 신축물량 통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0년대 한국을 병참기지화하면서 일본이 여러가지 통제령을 발표한 것과 연관되어 이해될 수 있다. 시험내용에 관한 해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건축법규에 관한 시험내용에 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지만 건축기술에 관해서는 ‘....건축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이라고 해도 이발업의 수험자가 가위 등의 사용법을 시험보는 것과 같이 못 박는 법 등을 시험보는 것이 아니고 건축전문의 기능에 관한 학문의 시험이 행하여지므로 오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정도의 해설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시가지계획령을 얼마나 주지하고 있는가가 건축대서사 선발의 주안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都市と建築』지에 소개된 실제 시험내용을 보아도 시가지계획령에 대한 문제가 상세한 항목으로 출제된 반면 건축기술에 관한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 만을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건축대서사취체규칙이 건축사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은 일본에서 건축사법이 제정된 과정을 보면 쉽게 짐작이 간다. 일본에서의 건축사법의 제정노력이 1914년 전국건축사회(일본건축사회의 전신)에서 시작되어 1925년에는 사법제정을 의회에 상정하였지만 결국은 사법제정에 실패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인 1951년에 가서야 건축사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1938년 식민지인 조선에 건축사법의 일종인 건축대서사취체규칙이 제정되었을 리가 없는 것이다.

건축대서사취체규칙이 건축사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법안이었고, 그것은 전쟁수행을 위하여 식민지의 신축 행위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안이었다는 역사적인 이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해방이후 건축대서사취체규칙이 그대로 존속했고, 그것이 건축사법의 전신인 것처럼 연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건축대서사제도에 관한 기존의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YWCA, 김재철



중대 도서관, 차경순



메트로 호텔, 이희태

18) 上野 勲, 「建築代書士に就て○」, 『都市と建築』, 1941. 9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의 ‘건축사’는 1965년의 건축사 자격제도와 그 시험에 의해 출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시작은 일제말기인 1940년대 전후부터였던 것이다.”¹⁹⁾

건축대서사취체규칙이 외형상 시험을 통하여 건축대서사를 선발하여 건축허가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건축사 자격제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는 건축대서사취체규칙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 이외에 되건축사 자격제도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깔고 있는 것이다. 즉 1965년 최초 시행된 건축사자격시험이 단순한 선발시험의 일종이 아니라 형식상으로는 전문단체가 전문영역에서의 배타적 권한을 부여 받는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이 제도화되는 것이었다. 해방 후 건축법이 제정되는 1960년까지 시가지 계획령이 그대로 존속하였고 또한 건축대서사취체규칙은 62년까지 존속하였다. 문제는 건축대서사취체규칙의 성격과 그에 의해 배출된 건축대서사들이 이후 건축사로 변모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해방과 더불어 일본인들이 사라졌고 그 자리는 한국인으로 대체되어야 했다. 또한 시가지계획령을 바꾸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었다.²⁰⁾ 따라서 건축대서사취체규칙도 그대로 존속되었다. 따라서 그 숫자가 철저하게 통제되던 건축대서사들이 건축허가를 위해서 다수 선발될 필요가 있었다. 행정의 공백으로 건축대서사 시험이 관의 주관하에 치루어 지지 않고 그 대신 조선건축사협회에서 대신하여 건축대서사 시험을 치루었다.²¹⁾ 그렇지만 숫자의 통제에 있었던 해방 전의 건축대서사와는 그 성격이 다를 수 밖에 없었다. 해방전 한국인으로 건축대서사에 선발된 사람들은 한국인 건축가들 중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반해 그 숫자의 통제 기능이 상실된 해방 이후의 건축대서사(조선 건축사협

회에서는 건축사라고도 불렸지만 실세는 건축대서사임)는 시가지계획령과 건축대서사취체규칙의 존속으로 인하여 행정상 모자라는 건축대서사들을 보충하는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대서사는 통제된 정원으로 선발되지 않고 형식적인 시험과 면담에 의해 다수 선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건축 전문영역에서 그들이 담당하는 역할도 건축가들의 전문영역에 전혀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당시는 건축허가에 있어서 건축대서사의 중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미군관련 공사나 관주도 건축물의 공사일 경우는 건축대서사가 필요치 않았다. 건축대서사의 도장이 필요한 일반 건축물의 신축에 있어서도 건축가들은 쉽게 건축대서사사무소에서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도장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건축가들은 건축대서사 제도의 존속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별로 느끼지 않았으며 건축의 전문영역에서 건축가들에게 건축대서사들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다. 6.25전쟁 이후로도 건축대서사제도는 그대로 존속되었다. 1955년 4월 13일 서울 특별시 규칙 제 56호로 서울특별시 건축대서사규칙이 재확인 되었으며, 1962년 4월 30일 규칙 제 251호로서 행정서사법 공포시로부터 폐지 되었다. 1965년 4월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치루어진 1차 건축사시험에서 무시험 전형으로 350명이 합격한 사실은 해방 당시 한국인 건축대서사의 숫자가 80명 내외 (43년 한국의 건축대서사는 219명이었고, 그 중 한국인의 숫자는 창씨개명으로 인한 정확한 숫자의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72명에서 3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였던 것을 생각하면 1946년에서 1963년 건축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270명 이상의 건축대서사가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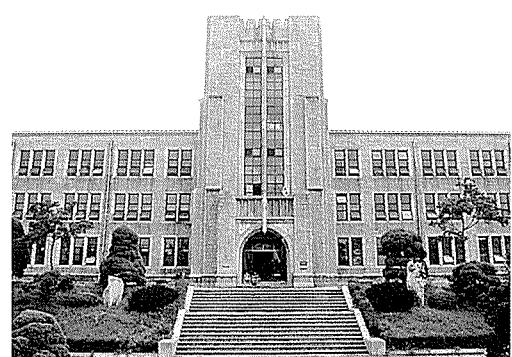
건축사법은 5.16직후 정부의 권유에 따라 그 법안의



이대 미대, 김경환



동국대 과학관, 송민구



동국대 본관, 송민구

19) 김정동, 「1940년 전후, ‘건축대서사’제도의 시행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1991. 12

20) "... 건축에 관한 현행 법규는 아직 일정시대의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터로 불유쾌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國恥되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축행정상 훌륭한 규정임으로 우리 정부가 수립되며 보다더 훌륭한 보다더 이상적인 법규가 제정될 때까지는 구태여 베릴 필요도 또 베릴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윤종규(1947년 당시 윤종규건축사무소주), '건축공사에 대한 허가수속'『조선건축』, 1권 1집, 1947)

21) 「조선건축」에 1946년 7월 해방후 최초의 조선건축사자격시험(건축대서사 시험의 연장)이 치루어졌고 47년 7월 25일 2차 시험이 치루어졌다는 기사가 있다.

성안이 이루어졌다. 이미 건축사법 제정 당시 건축사협회대 건축학회와 건축가협회간에 빚어진 마찰에 대해서는 이 문보의 '건축사법령에 관한 소고'(건축 64년 2월호)와 정인국의 『현대건축론』(1970년, 283-5쪽)에 그 경과가 잘 소개되어 있다. 건축사협회와 건축학회+건축가협회의 건축사법 제정을 둘러싼 대립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실무경력 연수에 관한 것과 둘째는 건축대서사들의 특별전형에 관한 것이었다. 건축사협회의 주장은 기존의 건축대서사들에게 특별전형을 통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자는 것과 더불어 응시자격 실무경력 연수를 대학 졸업후 8년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학회와 가협회는 4년의 실무경력에 건축대서사 특별전형의 폐지와 도서등록에 대한 조항의 폐지를 주장했다. 사법 제정 당시의 단체들간의 갈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에 영국의 RIBA와 일본의 건축사법 제정에 관한 내용을 요약할 필요가 있다.²²⁾

서양의 경우 건축가의 출발은 르네상스를 계기로 하나의 전통을 수립하게 된다. 회화, 조각, 건축이 아직 미문화되었던 르네상스 시기 이전에는 건축을 포함한 시각예술분야가 그 노동의 질이 매우 저질로 평가 받아왔다. 이는 시각예술이 본질의 모방인 현실을 또다시 모방한다는 플라톤의 이중모방(double imitation) 개념으로 인하여 시각예술은 오랜동안 지적인 작업으로 여겨지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르네상스에 이르러 예술가를 후원하는 강력한 후원자의 등장과 더불어 건축가(화가와 조각가를 겸한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는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되고 따라서 건축가의 작업도 고급한 지적작업의 연속선 상에 있음을 보일 필요가 생긴 것이다. 건축가의 작업을 지적작업으로 파악하려는 건축가들의 노력은 건축물을 비례법칙과 규범에 따라 설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르네상스 건축가는 신사 건축가 또는 예술가 건축가라는 전통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건축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이 1671년 설립된 프랑스 왕립

건축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애鄱들로 분야가 나누어지기는 하였지만 소수의 엘리트 건축가들 그룹은 아카데미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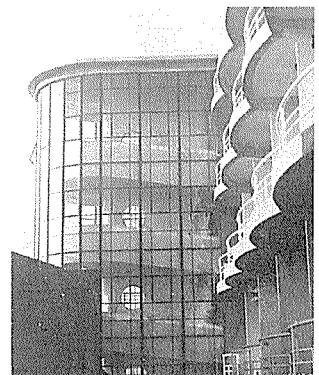
18세기 말에 실무조건이 새롭게 변하였다. 인구폭발로 건축수요가 급증하였고 따라서 일반도급업자(general contractor)가 탄생하게 된다. 또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건축가로 활동하면서 이들이 건축계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게 된다. 1834년 "Architectural Magazine"의 기사를 보면 "...요즘 많은 건축가들은 건설자가 감리자를 선정하지 못하게하고 그 일을 자신의 직원이나 자신이 지명하는 사람 만을 쓰도록하는 것이 유행되고 있다. ... 이들 건설자 출신의 건축가들은 무지나 속임수로 좋지 못한 예들을 남기고 있다. 즉 일부건축가들이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을 사기친다는 사실이다. 깔끔하고 매력적인 도면과 실제보다 2배나 1.5배 불린 보수로 유혹하여... 또 다른 예로는 일부 건축가 사이에 성행하는 비열한 사기의 하나로 건설자에게 커미션을 받아내는 것이다. 만약에 건설자가 수수료를 거절할 경우 공사를 맡기지 않고 그만두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건축가들은 사이비건축가들과 구별짓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1834년 1월 8일 IBA(Institute of Britisch Architects) 조직을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개의 위원회가 생겨나게 된다. 이들 위원회가 각자 협회로 발족한 것이 The Society of Britisch Architect와 The Society of Architects and Surveyors라는 단체였다. 전자가 건축가만을 회원으로 고집하는데 반해 후자는 측량에 관계되는 감독관들도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이 두 단체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결국 5월 투표로 The Society of Britisch Architect의 안이 결정되게 된다. 투표시에 회의에 참석한 일반인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서베이어들의 온갖 반대를 무시하고 건축가만을 회원



한양대 강당, 박학재



한양대 강당, 박학재



이대 병원, 김경환

22) 각국의 전문단체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졸고 "각국의 전문단체 형성과 건축가의 위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92년 9월호) 참고

으로 하는 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 안에 따라 The society of Britisch Architect는 해산하고, 1834년 6월 4일 Institute of Britisch Architect라는 단체가 창설되게 된 것이다. 1866년 빅토리아 여왕의 인준으로 오늘날의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ch Architects)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RIBA는 각국에 전문직으로서의 건축협회 창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예술가 또는 신사건축가의 오랜 전통이 없는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전문직으로서의 건축가의 사회화 과정은 단체의 형성보다는 사법제정이라는 제도화 과정에서 찾아진다. 일본에서 서양식의 건축가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이었다. 개항지구에서 일본인들이 말하는 양풍건축을 습득하여 의양풍의 건축을 하기 시작한 清水喜助(시미즈 기스케 : 1815~1881)를 비롯하여 서양식의 건축수법을 익힌 건축가들은 서구화에 치중한 정부의 후원하에 일본건축계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초기 건축가들 대부분은 정부의 영선기구에 있으면서 洋風건축을 지도하며 이들 건축가들은 정부건축가 대 민간 건설업자라는 양분구도와 또한 관존민비 사상으로 인한 주종관계를 성립하였고 이는 건축가에게 '고상함'과 '권위'를 부여하게 되었다. 동경대지진 이후 동경대 출신 건축구조학자인 佐野利器(사노도시가따 1880~1956)가 학회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건축비예술론 등 일본 건축계는 구조에 중점을 두게된다. 이에 대한 반발로 서양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실무를 하는 건축가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건축사회가 설립되고(1915년, 1914년 설립된 전국건축사회의 후신) 건축사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1925년 법안의 의회에 상정하지만 실패하게 된다. 건축계의 실권을 쥐고있던 일본건축학회는 교수, 재료업자 그리고 구조 전문가, 건설업자 등 다양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따라서 실무건축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제정에 찬성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19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일본의 건축사법 제정노력은 2차세계대전이후 일본에 주둔한 미군공사가

활기를 띠면서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한 건축가들을 통제하기 위한 전제부흥원의 건축사법 제정 후원으로 인하여 1951년 건축사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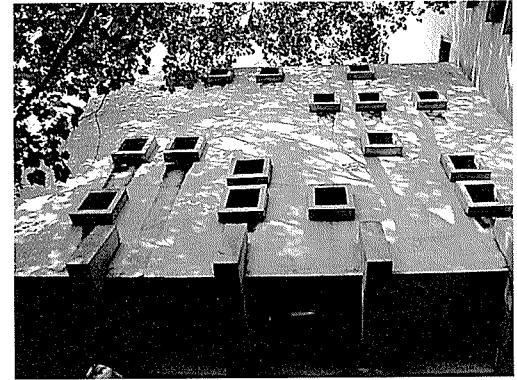
RIBA 설립을 놓고 벌인 건축가와 서베이어의 갈등에서 건축가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르네상스 이후 신사 또는 예술가 건축가라는 문화적인 전통을 수립한 서양에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전통적인 건축가 개념이 자리잡지 않은 일본에서는 건축사법이라는 제도적인 장치의 수립을 놓고 실무 건축가와 기타 건축관련인들간의 갈등에서 실무건축가들이 쉽게 우위를 점하지는 못했다. 한국에서는 식민지의 건축활동 통제 수단으로 질보다는 양적인 통제에 목적이 있었던 건축대서사제도가 등장하였고, 건축전문영역의 사회화 과정에서 건축대서사들이 건축가들과 대립되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정부에서 협회에 특권을 준 안이 통과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민주적이지 못했던 당시의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립 자체는 어느 나라고 필연적인 과정 중의 하나였다면 건축대서사들이 주체가 되어 건축의 전문영역에서의 배타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식민지 상황의 잔재와 민주적이지 못했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직으로서의 건축가가 사회 속에서 부여받는 특권이 돌아가는 단체와 그를 위한 건축가들의 자질 향상노력을 하는 단체가 분리되어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문직으로서의 건축가들이 지녀야 하는 권한과 의무는 결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임은 앞서 언급한 바가 있다. 이러한 권한과 의무의 분리와 함께 보다 더 큰 문제는 사법제정당시의 비민주적인 과정에 대한 불신과 해방에서 사법제정 당시까지 건축대서사가 차지하던 미미한 역할에 대한 기억으로 인한 감정적인 건축가들의 의식이 건축실무의 사회화를 대표해야 할 단체를 자신이 고치고 발판으로 삼는 단체가 아니라 법적으로만 타율적으로 참여하고 이익만을 추구해도 좋은 단체로 방치해 버렸다는 것이다.



성베다 교회, 김희춘



한양대 본관, 박학재



남대문 시장, 박학재